마포소방서 상암 1 1 9 안전센타 신축공사
소화설비 시방서(기계)

2 0 0 7. 12

목　　차

1.　　일 반 사 항

2.　　소화기구 설비공사

3.　　피난기구(완강기)설비공사

1.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포소방서 상암 119 안전센터 신축공사에 공사하는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하고 본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법시행령, 동시행령규칙, 내무부령 소화검사 규칙 및 동운용 지침에 의한다.

2) 현장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현장감독원” 이라 함은 당사에서 발주하는 도급 공사의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당사직원(또는 위임받은 자)을 말한다.

3)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이라 함은 공사 수급자가 계약된 공사에 지정하는 시공기술자(소정의 국가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를 말하며, “현장요원” 이라 함은 공사 수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직원을 말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의 책임

현장대리인 및 현장용원은 공사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등 담당 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이 의

a.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현장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b.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이더라도 관련법규에 저촉된 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감독원과 협의하여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a. 수급자는 관련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착공계와 함께 현장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공정표는 공종 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 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b. 수급자는 노무동원, 자재 반입계획 및 시공도가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현장감독원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선정 및 관리

a. 자재선정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표시품, 관계법령에 의거 표준품 이상의 신품으로 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국산 최우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주요장비류 및 주요자재(현장감독원이 지정한 품목에 한한다.)는 제작도면 또는 기타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첨부하여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 등을 제시하여 현장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자재의 견본품은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b. 자재관리

· 자재중 도료, 유류등 인화성물질은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하여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도서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자재의 발생품 등은 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현장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 배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 관류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시공관리

시험 및 검사는 후속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전에 종합시험 및 검사를 하고 제반사항을 기록보관 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현장감독원과 협의후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9) 설계변경

수급자는 설계변경을 임의로 할 수 없으며, 현장감독원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0) 준공도면

수급자는 당초 설계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준공도면을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소화기구 설비공사

1) 소방 대상물에 따라 별표 1(소방 대상물 및 위험물별 소화설비의적응성)에 의하여 그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2) 소방 대상물에 따라 능력 단위가 별표 3(소방대상물별 소화 기구의 능력단위기준)에 의한 기준이상의 것으로 할 것.

3) 별표 4(부속 용도별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좌 란에 정한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표 4의 우란에 정한 소화기구를 추가하여 설치 할 것.

4) 소화기구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에 있어서는 20M, 대형 소화기에 있어서는 30M 이내가 되도록배치할 것.

5) 소화기구(자동확산식 소화용구는 제외한다.)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곳에 개시할 것.

6) 아파트 세대의 주방 가스렌지 상단에는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한다.

7) 보일러실의 보일러 상단에는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한다. 다만, 면적이 20M^{2}범위 이내에만 적용한다.

[다만, 아파트 세대별로 개별적인 난방을 위한 보일러실로서 그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부터 분리하여 방화구획하고 방화문(통기구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한 것은 자동확산 소화용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 피난기구 시방서

(1) 설치기준

1.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만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수 있는 상태에 둘것.

2. 피난 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것. 다만, 미끄러봉, 피난교, 피난용트램, 호텔, 객실에 설치되는 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교한 부분에 볼트조임 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교하게 부착할것.

4. 완강기는 하강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것.

5. 완강기는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강착면까지의 길이로 할것.

6.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피난기구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완강기의 구조 및 성능

1. 완강기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타인의 도움없이 자기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하여 교대로 강하할수 있는 기구 이어야 한다.

2. 완강기는 속도조절기, 속도조절기의 연결부, 로우프, 연결금속구 및 밸트로구성되어야 한다.
3. 속도조절기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나. 평상시에 준해청소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작동할수 있어야 한다.

다. 강하시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기능에 이상이 생길수 있는 모래나 기타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아니 하도록 견고한 덮게로 덮어져 있어야 한다.

마. 강하시 로우프가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속도조절기의 연결부는 사용중에 분해, 손상,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또한 속도조절기의 이탈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완강기에 사용하는 로우프의 와이어 로우프이어야 하며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와이어 로우프의 지름은 3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길이에걸쳐 균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와이어 로우프에 외장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길이에 걸쳐 균일하게 외장을 하여야 한다.

다. 강하시 사용자를 심하게 선회시키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양끝은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밸트의 연결장치에 연결되여야 한다.

6. 밸브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너비 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착용에 필요한 부분의 길이는 160센티미터 이상 180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나. 밸트는 로우프에 고정되어 있거나 또는 분리식인 경우 쉽고 견고 하게 로우프에 연결될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강하시 사용자가 감시하거나 동작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사용자의 가슴둘게에 맞도록 밸트길이를 조정할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한다.

7. 연결금속구는 사용중 분해, 손상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결 금속구에 사용하는 리벳트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사용자를 다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